

1. 검증 결과에 대한 마크 사용 기준

1.1 검증 결과에 대한 각 마크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1.1 IAF MLA 마크 사용 및 가입사실 표시

- 1) 국립환경과학원이 IAF의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에 가입함에 따라 KMR은 MLA마크를 사용하거나, 가입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2) IAF MLA 마크 및 가입사실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IAF MLA 마크

3) 마크 사용 시 유의사항

- 가. IAF MLA 마크는 ISO 14064-1 표준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나. KMR은 인정기관과 IAF MLA 마크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다. KMR이 IAF MLA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IAF ML 2 IAF MLA 마크 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서명한 IAF MLA 주요 범위 및 부속 범위에 대해서만 KMR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마크와 함께 IAF MLA 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 라. IAF MLA 마크는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한 공식 문서를 사용하여 복제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쇄하여야 한다.
 - 흑백 또는 컬러인 경우에는 Pantone 2747(진청색)과 Pantone 299(연청색)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 선명하게 대비되는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IAF MLA 마크의 전체 단어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IAF MLA 마크의 khvr이 최소 20mm이상이어야 한다.
- 마. 승인된 사용 권한은 비독점적이다.
- 바. KMR에게 허가된 IAF MLA 마크의 사용 권한은 양도할 수 없다.
- 사.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마크와 KMR의 이름 또는 로고가 동일한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크기가 모두 유사하지 않은 경우, KMR은 어떠한 문서에도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문서는 어떠한 양식이나 매체도 될 수 있다.)
- 아. KMR은 항상 그리고 수시로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IAF가 제공한 지침, 조건, 품질표준 및 IAF MLA 마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 자.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IAF의 요청이 있는 경우, KMR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IAF 측에 IAF MLA 마크 사용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차. KMR은 KMR의 IAF MLA 마크 사용을 관리해야 하며, KMR이 인증한 조직들의 잘못된 인용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KMR이 인증한 조직이 IAF MLA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카. KMR은 IAF MLA 마크에 대한 소유권, 권원(title) 또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타. KMR은 IAF MLA 마크에 대한 IAF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용권자인 IAF MLA 회원 및 또는 IAF와 전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한다.
- 파. KMR은 IAF MLA 마크에 대한 IAF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4) IAF MLA 마크 사용에 관한 협정 해지

- 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경우
- 나. 협정서 약관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결정할 경우
- 다.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KMR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 라.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의 IAF MLA 자격 또는 IAF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 마. IAF와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간의 IAF MLA 마크 사용을 위한 협약이 종료된 경우
- 바. KMR에게 사용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식으로 통지한 경우
- 사. IAF가 KMR에게 정식으로 통지한 경우

1.1.2 국립환경과학원 마크

- 1) 국립환경과학원 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 2) 국립환경과학원 마크의 색상은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 로고 마크의 오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안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그 외 검증 결과를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 추가, 도형의 (색상, 모양 등)변경, 결합 및 임의 변형은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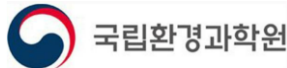


그림 2. 국립환경과학원 마크

- 5) 단순 오용 또는 태만/기만적인 오용 시 검증이 취소됩니다.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홍보, 검증 의견서 사용 등을 중지해야 하며, 다만 이미 표시되어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3 KOLAS 마크

- 1) KOLAS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 2)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 3)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 4)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국인정기구에서 제공하는 원본파일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6) 검증의견서 서식에 KOLAS 인정마크를 음영 처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 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이하의 워터마크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음영 기법의 채택은 KOLAS 공인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7) 그 외 검증 결과를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 추가, 도형의 (색상, 모양 등)변경, 결합 및 임의 변형은 금지한다.



그림 3. KOLAS 인정 마크

1.1.4 국제통용발자국 검증 스킴 마크

- 1)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스킴마크(이하 “스킴마크”라 한다.)는 운영기관의 유효승인을 유지하고 있는 검증기관이 승인 사실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이다. 그 소유권은 운영기관에게 있다.
- 2) 스킴마크의 심벌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아래 표에 명시된 승인받은 검증기준의 기호와 검증기관의 고유 승인번호(000) 및 제품 조합한 KITECH-XXX-000의 문구를 포함한다.



_ KITECH-CFP/ISO-001 #76a94c

그림 1. 스킴마크 심벌의 표시형태(예시)와 색상

검증기준	ISO 14067	PAS 2050	ISO 14046
승인기호	CFP/ISO	CFP/PAS	WFP/ISO

표 1. 승인받은 검증기준의 기호

- 3) 검증기관은 아래의 사용 규칙을 충족하도록 스킴마크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스킴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킴마크 도안요령에 따라 최소 사용 규정 및 최소 공간 규정을 준수한다.

나. 스킴마크의 색상은 그림 1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림2와 같이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심벌과 로고타입 두가지 요소를 함께 사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결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 심벌의 배치를 변경하면 안된다.
- 심벌의 크기나 비례를 변형하면 안된다.
- 유사계열 및 그라데이션 배경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 심벌에 도형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 윤곽선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 상이한 색상이 경계면인 배경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 심벌의 각도를 변형하면 안된다.
- 복잡한 이미지 배경 및 패턴 배경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 심벌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라. 미승인된 검증기관은 검증의견서에 스킴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발행되는 것처럼 고객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마. 검증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검증기준 내에서 검증성명서에 스킴마크 및 운영기관의 승인 사실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 사실을 문구로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검증기관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으로부터 [탄소/물발자국] 검증기관으로 승인(승인번호: KITECH-XXX-000)* 받았습니다.”

4) 검증기관은 당해 기관이 검증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규정, 절차나 지침을 기재한 문서, 교재, 수료증 등의 문서에 검증기관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5) 운영기관은 승인 받은 날부터 검증기관이 승인 사실 및 스킴마크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6) 스킴마크의 오용은 승인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검증기관의 광고, 카탈로그 등에 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검증성명서 회수, 정정광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승인을 받지 않은 조직이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검증성명서에 스킴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의 표시 이외에도, 검증기관은 검증성명서에 부착되는 검증기관로고 또는 스킴마크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당국에 검증기관로고 또는 스킴마크를 등록하여야 한다.

8) 스킴 심벌 및 로고의 도안 요령은 아래와 같다.

가. 최소 사용 규정 : 심벌은 15mm, 스킴마크는 27mm 이하로의 사용을 금지한다.



나. 최소 공간 규정 : 최소 여백 규정으로 해당 여백에 규정되지 않은 문자나 그래픽 요소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심벌, 로고 결합 규정 : 심벌과 로고 타입을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5 탄소발자국 도안 표시방법

가. 탄소 발자국을 나타내기 위한 도안의 명칭은 '카본 발룬 도안(탄소발자국 도안의 명칭이며,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집한 가상의 풍선을 말한다.)'이라하며, 도안 모형은 제품 또는 포장재 및 용기에 제1형으로 표시하고, 불가할 경우 제품 설명서 및 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그림 5. 제 1형 (제품 또는 포장재 및 용기에 표시) 도안 모형(좌) 및 도안 요령(우)

나. 카본 발룬 도안의 별색 컬러는 'CO2'는 KITECH Blue로 하고, '바탕'은 KITECH Green, '탄소발자국'은 풍선 안에 음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KITECH Blue, KITECH Green, 그리고 흑백음영이다.

다.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의 경우에 'CO2'는 C95+M73으로 하고, '바탕'은 C55+Y100로 하며, '탄소발자국'은 안에 음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95+M73, C55+Y100, 그리고 흑백음영이다.

라.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한다.

마. 탄소배출량 산정에 사용한 검증기준(ISO 14067, PAS 2050 등)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약자(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및 검증기관의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1. General Information	
2. Product Description	
3. The Amount of CO ₂ -equivalent	
4. Certification information	
Accreditation	KITECH
Certificate Authority[Standard]	
Certificate No.	
Valid Until	
Label	

그림 6. 제 2형(제품 설명서 및 인터넷 등에 영문 게재)

- 3) 위의 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검증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검증범위에 대해서는 위의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4)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5) 인정 마크는 반드시 KMR 로고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 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1. 좌우 대칭의 경우



그림 2. 상하 대칭의 경우

1.2 KMR의 인증증 로고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본 인증 로고



그림 2. ISO 14064-1



그림 3. ISO 14067



그림 4. GIS 인증

- 1.3 표준 및 자체 인증에 대하여 로고는 기본 로고를 변형하여 사용하며, 기본 인증 로고는 빨강색, 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은 초록색을 기본으로 하고 로고 하단에 표준 명 표기를 통해 구분한다. 컬러의 표현은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표현을 사용한다. 4원색 표현 시 인쇄매체 이외의 색상적용에는 지정 Pantone Color와 가장 근접한 색상(표 1. 참조)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표 1.

Primary Colors

A) KMR RED	or	PANTONE 199 C	or	M100+Y62	or	R237+G23+B79
B) KMR BLACK	or	PANTONE Process Black C	or	K90	or	R65+G64+B66
C) KMR BLUE	or	PANTONE 3005 C	or	C100+M34+K2	or	G129+B198
D) KMR GREEN	or	PANTONE 360 C	or	C58+Y80	or	R115+G193+B103

1.4 인증증 표시 오용시 조치

- 1) 인증증 조직이 인증증 의견서(성명서) 활용 중 로고 사용 기준에 위배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KMR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2) 조직은 시정조치 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당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 3) 인증증 결과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로고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 이러한 경우를 발견한 경우 각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1.5 인증표시 사용 중지

- 1) KMR은 인증증 수행범위 취소 또는 축소 등의 경우 즉시 로고와 인정마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2) 허용되지 않은 로고의 사용은 법적 책임이 따르며, 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로고가 들어간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증 기념품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